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고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II. 의견제출

#### 1. 제출기한

2022년 12월 20일

####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의견서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 044-215-4472, 팩스 :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mailto:simpjs@korea.kr))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25호(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붙임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정현욱 관세사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